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92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예 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제38조제2항)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11.

다. 회 부 일 : 2025.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한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며 정부가 고시하거나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거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는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고, 실무상 이러한 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시에 수행되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실시되는 적격성조사는 이를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위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u><신설></u>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사업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로, 동 개정안은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안, 의안번호 제8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¹⁾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안, 의안번호 제8791호) 친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²⁾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

③ ~ ⑥ (생략)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4. (생략) ② ~ ④ (생략)	<u>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성조사를 하여야 한다.</u>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4항----- ----- ----- 3. 제9조제5항----- -----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³⁾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①정부고시사업과 ②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됨. ①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분석을 한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②민간제안사업 역시 총사업비가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⁵⁾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격성조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임.⁶⁾

적격성조사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96조제2항⁷⁾에 따라 ①타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필요성 분석
3.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정의)

이 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민자적격성조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1. 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지 여부를 판단. 다만, 예타면제 판단을 받거나 예타비대상이면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등 타당성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적격성 판단 이전에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당성 판단, ②적격성 판단, ③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의 단계로 수행하는데, 이 중 타당성 판단은 해당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계층화분석(AHP)의 평가방법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준용하되, 민간투자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

-
2. 적격성 판단 :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이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며, 실행가능한 부대·부속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계층화분석(AHP)의 평가방법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준용하되, 민간투자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
 2.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다.
 3. 민간투자대안의 사용료 수준은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시 재정사업 사용료의 1.0배 내지 1.5배 이내의 사용료를(다만,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징수할 경우 등에 대해 수요 및 정량적 적격성에 대한 민감도를 함께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사회기반시설 이용수요의 추정은 주변개발계획 등 정책적 사항 및 각 민간투자대안별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수요를 적용한다.
- 제96조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참고로,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적격성 조사시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을 수행하도록 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평가한 항목들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2조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9)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5조(대상사업의 유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수행방식이 대체로 유사하므로 적격성조사 통과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적격성 조사는 조사절차·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시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비용·편익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하므로 이미 시행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갈음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어 비용·편익 등 여건 변화가 커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재검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현행 법령 하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타당성

10)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재조사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¹¹⁾

-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11)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 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
4.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6.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설></u>	11. 「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 제9조제3항에 따른 <u>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사업</u>

문의처

02)6788-5155